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5. 31 선고 2021가단5611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정원, 류호문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5. 3.

판 결 선 고 2022. 5. 31.

주 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1. 2. 26.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4,520,21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4,520,2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868717호로 “C은 원고에게 12,103,609원 및 그 중 9,135,444원에 대하여 2018. 1.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21. 2. 14.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E, C, F가 상속인이 되었다.

다.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1. 2. 14.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21. 3.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8. 4. 26. 채권최고액 12,000,000원인 근저당권자 G조합의 근저당권이, 2018. 6. 20. 채권최고액 8,400,000원인 근저당권자 G조합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21. 12. 7. G조합에 위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 17,040,625원을 변제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도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다.

바. 원고의 2021. 5. 17. 기준 C에 대한 채권의 원리금은 합계 18,086,097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H, G조합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초과 상태인 C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그 당시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중 C의 상속분인 1/4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을 부양한 피고의 기여분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은 없으므로 C이 이를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의 병원비나 통신요금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기여분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해 피고 주장의 기여분이 산정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후인 2021. 12. 7. 제1의 라.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러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아니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불공평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2) 나아가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목적물 중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던 부분의 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35,103,470원인 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7,040,625원을 공제한 나머지 18,062,845원(=35,103,470원-17,040,625원) 중 C의 상속분은 4,515,711원(=18,062,845원×1/4, 원 미만 버림)이므로, 위 4,515,711원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위 4,515,711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4,515,7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범

별지